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입찰재공고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해도제작(동해안 부근)
- 용역금액(기초금액) : 920,7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완수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착수일 : 과업지시서에 따름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용역내용 :
 - 통합해도제작시스템(HPD) 데이터 구축
 - 측량원도 반영(총 68도엽) / 구조화편집(총 17셀)
 - 종이해도 17종(보정도 포함) 제작
 - 전자해도 제작
 - S-57 54셀, S-101 54셀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련 내용이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경쟁,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금액을 원단위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 계약체결 시 원단위 금액은 절사되므로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 '해도제작업(업종코드:5033)'으로 등록된 자

*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로, 위 자격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 [붙임1]를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2026.8.13.(목) 18:00까지 우리원 해도수로과

○ 제출서류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1부, 사본(증빙서류 제외) 7부, CD 1부)
-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의 경우)
-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확인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 ⑤ 기타 자격 확인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평가는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5. 입찰서(가격) 제출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8.31. 10:00 ~ 2026.9.2. 10:00

- 적격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9.2. 11:00

- 장소 : 국립해양조사원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시스템)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 업무 처리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222호, ‘25.11.6)’에 의합니다.
- **국립해양조사원 사업에 계약상대자, 낙찰자 및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고 진행 중인 타 사업에 중복 참가하여 기 평가된 용역적격심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적격심사를 재평가(참여 기술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등) 한 후 타 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등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제,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붙임 2]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안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각서는 대표자와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공고문의 붙임3, 붙임4 서식 참조), 계약이 체결된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수계의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계약상대방)와 발주기관(국립해양조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발주기관(국립해양조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및 평가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도수로과(051-400-4322)로, 기타 계약 일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

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답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이거나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인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 대상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붙임 3>

대표자-용/ 착수계와 함께 제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붙임 4〉

참여지-용/ 착수계와 함께 제출. 단, 착수계에 '보안서약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불요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illegible]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